

工業所有權審判事例

— (國) (內) (事) (件) —

特 許 無 効

〈大法院 第2部判決 1978. 9. 12〉

裁判長：大法院判事	주	재	황
關與法官	"	양	호
"	"	임	준
"	"	라	조

1. 抗告審判請求人(上告人) : 이 성 준
서울 영등포구 오류동 13의 1
訴訟代理人 辨理士 김성환
2. 被抗告審判請求人(被上告人) : 特許廳長
3. 原審決 : 特許廳 1978. 5. 29 1976抗告審判 第629號 審決
4. 主 文 : 上告를 棄却한다. 上告費用은 抗告審判請求人의 負擔으로 한다.

5. 理 由

抗告審判請求人 訴訟代理人의 上告理由를 본다.

原審決이 그 說示와 같은 理由에서 本願考案은 公知된 引用參證의 公案으로부터 本원公案의 그 程度의 技術은 本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라면 극히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는 것이라 認定한 判斷措處를 記錄에 對照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조치는 公認될 수 있는 바로서 그 판단과정에 訴訟과 같이 기술상의 相違點에 관한 審理未盡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와 背馳되는 見解에 立脚한 論旨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.

그러므로 上告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敗訴者인 항고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 關與法官의 一致된 意見으로 主文과 같이 판결한다.

— 參 考 —

△ 抗告審判

1976년 항고심판 제629호 심결
항고심판청구인 이 성 준
서울영등포구 오류동 13의 1
대리인 변리사 김 성 환

1975年 實用新案登錄 第6786號
거절사정불복항고심판청구 사진에
대하여 주문과 같이 심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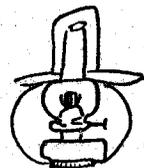
주문: 本件 항고심판청구는 成立할 수 없다.

審決理由: 항고심판청구인은 原査定을 破棄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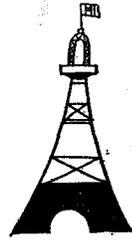
1975년 실용신안등록 제6786호는 이를 등록할 것으로 한다는 심결을 구하고 그 이유의 要旨로서 本원의 公案과 거절인용公案은 서로 상이

한 別個의 公案임에도 이를 거절한 원사정에는 承服할 수 없다고 主張하였다.

인용참증公案은 耐久성이 좋은 폴리에틸렌 필름과 氣密性인 無氣孔 필름을 포함함으로써 필름 各기의 特性을 살려 包裝內容物의 變質防止와 長期間保管이 可能한 包裝材를 얻었음이 公知되었으며 通상의 知識을 가진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이와같은 趣旨로 本원의 公案을 거절한 원사정은 適法하다 할 것이며 이와 相反되는 항고심판청구인의 主張은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다.



— (國) (外) (事) (件) —



共有의 特許權과 共同審判

〈日本最高裁判所 1978年 3月 24日 判決,
1977年(行츠) 第112號 事件〉

1. 上告人: 富士寫眞필름KK
(以下 X라 함), 東洋釀造
KK(以下 Y라 함)

2. 被上告人: 特許廳長

3. 判決主文

本件上告를 棄却한다.

上告費用은 上告人들의 負擔으로
한다.

4. 事件概要

特許를 받을 權利의 共有者인 X
와 Y가 그 共有의 權利에 대하여
審判을 請求하는 경우 共有者의 全
員이 共同으로 할 必要가 있으니
本件은 X만이 單獨으로 한 審判청
구이기 때문에 不適法으로 却下된
審決에 대한 東京高法에의 審決取
消訴訟과 또한 이에 대한 上告審인
것이다.

原判決은

① 特許法 第132條 3項은 특허
를 받을 權利의 共有者가 그 共有
에 관한 權利에 대하여 審判을 청
구하려면 共有者 全員이 共同으로
하게끔 規定하고 있으므로 共有者
가 共同으로 審判을 청구하는 것이
審判청구의 適法要件이라고 解釋되
므로 上告人만이 單獨으로 한 審判
청구는 不適法하다.

② 共同으로서 審判請求人의 表
示에 上告인 Y를 記入한 審判請求

書를 提出하였음은 審判청구의 除
斥期間 經過後의 일로 屬하므로 特
許法 第121條 1項의 規定에 抵觸하
여 부적법하다.

③ 特許法 第132條 3項에 民事
訴訟法 第62條 1項의 規定을 適用
할 餘地는 없다.

④ 民事訴訟法 第62條를 共同審判請
求時에 排除함은 憲法 第29條, 32
條에 違反한다고 主張하나 特許法
所定의 節次에 따르면 특허를 받을
權利의 伸張, 防禦에 支障을 招來
하지는 않으므로 이 주장에는 左袒
할 수가 없다.

⑤ X가 單獨으로 한 審判청구에
대하여 補正할 수가 없다는 등을 들
어 判決하였. 따라서 上告인 X
와 Y가 本件訴訟을 提起하기에 이
른 것이다.

5. 上告理由의 概要

① 審査節次와 審判절차와의 關
係는 民事소송의 第1審과 第2審
과의 結合關係에서 보는 바와 같이
講學上의 固有必要的 共同訴訟의
範疇에 속하는 것이다.

② 특허법 제1조의 目的에 비추
어 132조 3항의 原判決의 해석은
매우 不當하다.

③ 單獨으로 한 審判청구에 대하
여 補正의 機會를 주지 않는 原판

결의 理由는 方式違反만의 補正을
許容하고 132조 3항 위반과 같이
오로지 審判청구를 하지 않은 다른
共有者의 意思까지를 포함한 것으
로 해석할 수 없다는 데에 있으니
必要的 共同審判의 경우는 民事訴訟
法 第62條 1項의 적용이 있으며 共有
者의 一部의 審判청구에 의해 共有
者全員の 權利를 위해 審判절차가 繫
屬한다. 따라서 審判請求人은 共有
者全員이 된다.

한편 審判請求書에 記載된 청구
인들은 共有者의 일부에 不過하다.
여기에 實體關係에서의 審判청구인
은 審判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간
에 不一致가 생긴다. 이는 특허법
제132조 3항에서 보면 청구서의
瑕疵로서 評價되며 이 하자는 當事
者의 表示의 一部誤記로써 把握할
수 있다고 주장했다.

6. 判決要旨

訴訟에 관한 原審判斷은 모두 정
당하다고 是認할 수 있으며 原판결
에 소론의 違法은 없다. 論旨는 獨
自의 見解에 立脚하여 原판결을 非
難하는데 불과하며 採用할 수가 없
다.

따라서 行政事件訴訟法 第7條,
民事訴訟法 第401條, 95條, 89條, 93條
에 따라 裁判官全員一致의 의견으
로 主文과 같이 判決한다.

7. 解 說

원판결은 共有者의 意사를 尊重
하였다 하여 妥當하다는 輿論이다.